

## 2021년도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원사업

#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(연장) 공고
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「기업맞춤형 현장훈련」에 참여할 기업들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2021년 9월 28일  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 I 사업개요

기업맞춤형 현장훈련사업은 중소기업이 입사 후 6개월이 넘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제 근무상황(근무시간 중 실제 생산시설, 장비활용)하에서 개별 기업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(훈련프로그램 지원, 내용전문가 지원, 훈련비용 지원 등)을 제공해드리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
### 1. 사업 목적

- 인력부족으로 근로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. 관련근거

- 「고용보험법」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 제1항 제13호·제145조(권한의 위임 등)제3항 제17호
- 「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호)

### 3. 선정규모 : 약 650개 내외(예산형편 고려 변동 가능)

유형	기업맞춤형현장훈련		특화훈련 모델	
	기본/단기집중	스마트팩토리	산업지구	스마트팩토리
650	350	60	120 (K디지털 훈련 포함)	120 (K디지털 훈련 포함)

※ 기업맞춤형현장훈련-스마트팩토리 : 스마트팩토리 도입(또는 예정) 기업 대상 관련 훈련

※ 특화훈련 : 특화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지원,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·계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

※ SW분야 S-OJT 참여 신청 별도

## II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### 1. 지원대상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해당하는 「우선지원 대상기업」으로서,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

### 2. 지원요건

- (고용보험 요건)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.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)
- (업종 요건)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####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제한기업

1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2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
  - 가.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  - 나. 비영리사업자. 다만,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
  - 다.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  - 라. 숙박업. 다만,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.
  - 마.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바.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사.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아. 협회 및 단체.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
  - 자.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
  - 차.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카.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

- (훈련대상 직무 요건)

제품의 제조·생산 프로세스 관련한 직무로 현장훈련 적합 직무이어야 하며, 경영지원업무와 관련한 직무를 비롯한 부적합 직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적합직무	부적합직무	불명확한 경우
설계, 인쇄·출판 등	세무, 회계, 외국어, 경비, 컨설팅, 보건·의료, 법정 의무훈련, 보건·의료 등	현장 실사 후 외부 전문가 의견에 따라 판단

※ 신규 직종 관련 사항은 현장훈련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

※ SW분야 S-OJT 별도 운영

- (스마트팩토리 훈련 참여 기업) 스마트팩토리 도입(예정)기업이 설비 변경에 따른 소속 재직자 직무전환 또는 적응을 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(프로그램 추가 개발 허용)

**스마트팩토리 구축(예정) 지원 정부지원사업**
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
-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
- 데이터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
-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(도입기업만 해당)
- 스마트화 역량 강화(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,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)
-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(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)
-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  
(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)

- (기타 참여제한)
  - 학습조직화 사업 및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해당사업 참여 근로자는 참여 제한  
\* 사업 종료(훈련수료) 또는 해당 사업 참여자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
  -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, 산재다발 사업장
- (우대요건)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 기존 훈련사업의 진입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훈련사업 참여이력(최근 1년 기준)이 없는 기업은 최종 선정시 우대
- (기존 참여 기업)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및 '20년도 기업맞춤형 현장 훈련 참여기업이 '21년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의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
하나 각 센터별 발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
\* 센터유형별 발급한도

유형	훈련 과정	한도	비고
지역·광역	기업맞춤형	기업맞춤형 훈련 목표량의 40%(소수점 올림)	중소기업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발급 한도 상향
	스마트팩토리	한도 없음	
특화	특화훈련	특화훈련 목표량의 40%(소수점 올림) K-디지털 훈련 한도 없음	(30% → 40%)

### Ⅲ 지원내용 및 기간

#### 1. 지원내용

항 목	지원내용	비고
훈련과정 개발 지원	○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-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프로그램 제공 - (유형) 기본과정(20~40시간), 단기집중과정(4~8시간), 특화훈련 - (지원한도) 기업당 3개 직무(과정)	
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	○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-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	2021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
훈련비	○ 현장훈련(OJT)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- NCS직종별 단가×수료인원×훈련시간 ○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(특화훈련센터) - 실비 지급(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)	
훈련교사 수당	○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-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- 최저 30만원 ~ 최고 60만원 ○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-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- (지원금) 훈련시간×10만원 - (한도) 300만원/훈련회차, 600만원/기업·연	특화훈련의 경우 훈련비 실비 편성 지원
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	○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- 전문 지원기관이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	

#### 2. 지원기간 : 약정일로부터 '21년말까지

- (신규기업) 선정 공문 시행일 ~ '21. 12. 31
- (2년차 기업) '21.01.01 ~ '21. 12. 31(프로그램 추가 개발 시 심사대상)
- (3년차 기업) '21.01.01 ~ '21. 12. 31(훈련비만 지원 : 선정절차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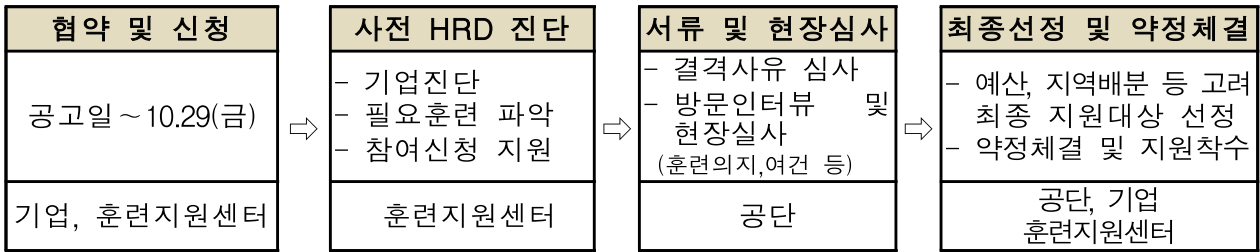
구분	유형	지원 사항	심사대상	약정	추천서 발급대상	지원센터 실적반영
▶ 신규기업 ▶ 2년차	프로그램 신규 개발	훈련비, 현장교사수당, 훈련컨설팅	○ (필요시 현장심사)	○	○	○ (컨설팅, 훈련실시)
▶ 2년차	'20년 프로그램 활용 훈련만 추가 실시	훈련비, 현장교사수당	X	○	X	○ (훈련실시)
▶ 3년차	'19년 프로그램 활용 훈련만 추가 실시	훈련비	X	○	X	○ (훈련실시)

※ 2년차, 3년차 기업이 기존 프로그램 활용하여 훈련할 경우 관할 공단에 훈련 실시 예정 공문 송부를 통하여 약정체결 후 훈련 실시 가능

## IV

# 신청·접수 방법

### <신청절차>



### 1. 신청·접수

- (접수기간) : 공고일 ~ '21. 10. 29(금) (기간 중 상시 접수)  
※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
- (제출서류) : 참여신청서\_서식1, 사업수행계획서\_서식2, 참여 제한요건  
자가확인서\_서식4([붙임3] 참조)
- (접수처) : 권역별·유형별 전문 지원기관([붙임1] 참조)

### 2. 사전 진단 및 안내

- (수행주체) : 전문 지원기관(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)
- (수행업무) : 사업내용 안내, 참여신청 절차 지원, 현장훈련 필요직무 진단 등

### 3. 서류 및 현장심사

- (심사주체) : 관할 공단 지부·지사
- (심사시기) 상시심사
- (주요 심사내용) 경영진 및 실무진 의지, 기업여건 적절성, 훈련준비 상황 등
- (심사 절차)



- 서류심사 : 제안내용에 대하여 기관역량, 사업계획, 예산사용계획, 시설·장비(사진 및 목록) 등 심사
- 인터뷰 심사 : 경영진 인터뷰, 제안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(방문, 비대면 가능)
- 현장 확인(필요 시) : 현장훈련 실시 적합 직종/직무 여부 확인
- (심사 특이사항)
  - 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 특례 : 정부지원약정서 및 사업종료 보고서 제출 시 현장확인 면제

- 직업능력개발훈련 종합컨설팅 참여 기업 : 심사 면제(공단 소속기관으로 컨설팅 착수계 제출→약정체결)

※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, 프로그램 검수, 현장훈련 모니터링 시 직무 부적합으로 판별되는 경우 약정해지 또는 지원 중단(센터 실적 제외)

## V 기타 주의사항

- 접수기간은 '21년도 사업목표(650개 기업) 조기 달성 시 접수기간 만료 전에도 마감될 수 있으며 이후의 추가모집 등 절차는 중단될 수 있음
- 약정기간 만료 전에도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 및 검수, 훈련 모니터링 또는 지도점검 시 현장훈련 직무 부적합,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이 적발되는 경우 등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해지 또는 지원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
-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사업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장심사 결과 또는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가 회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형편에 따라 신고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

**[붙임 1]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 현황 및 연락처**

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	사업유형	관할구역	주 소	연락처
한국생산성본부	지역단위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(적선동) 생산성빌딩 9층	02-724-1119 (fax : 02-724-1868)
경기경영자총협회	지역단위	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	031-8014-5484 (fax : 031-289-3494)
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	지역단위	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	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-20	051-610-3129 (fax : 051-611-1616)
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	지역단위	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	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	062-940-3012 (fax : 062-940-3059)
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	지역단위	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	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 전리로 415	041-850-9548
대한상공회의소	광역단위	서울, 강원, 경기, 인천,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, 상공회의소회관 2층 인력 개발사업단	02-6052-3785 (fax : 02-6050-3790)
한국생산성본부	광역단위	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,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, 1층	02-724-1811 (fax : 02-724-1868)
(주)한국경영인증원	특화(스마트팩토리)	전국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층 1204호	02-6309-9062 (fax : 02-6309-9005)
한국표준협회	특화(스마트팩토리)	전국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	02-2624-0200 (fax : 02-6919-4045)
(사)경북경영자총협회	특화(산업지구)		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5	070-4944-1730 (fax : 054-463-3363)
한국산업기술대학교	특화(산업지구)		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	031-8041-0634 (fax : 031-8041-0639)

**[붙임 2]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관할구역**

**소속기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**

☎ (국번없이) 1644-8100

기 관	소 재 지	관 할 구 역	비 고
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동대문구,성동구,광진구,송파구,강동구, 중랑구,강남구,서초구 ※ 서울특별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<a href="#">서울서부지사</a>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은평구,중구,종로구,서대문구,용산구, 마포구,성북구,노원구,강북구,도봉구	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영등포구,관악구,구로구,금천구,동작구, 강서구,양천구 ※ 서울특별시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전체	
강원지사	춘천시 (원주시)	강원도 원주시,횡성군,춘천시,화천군,홍천군, 양구군,인제군,영월군, 철원군(자격검정), 경기도 가평군(능력개발,자격검정) * 원주일학습지원센터(원주시, 횡성군, 영월군 능력개발사업) ※ 강원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강원동부지사	강릉시	강원도 정선군,평창군,태백시,삼척시,강릉시, 동해시,속초시,고성군,양양군	
<a href="#">인천지역본부</a>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, 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, 안산시·시흥시(외국인고용지원) ※ 인천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경기지사	수원시	경기도 수원시,안양시,의왕시,군포시,광명시,화성시,과천시, 안산시·시흥시(능력개발·자격검정) ※ 경기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경기북부지사	의정부시	경기도 의정부시,파주시,동두천시,양주시,남양주시, 포천시,연천군,고양시,구리시, 가평군(외국인고용지원), 강원도 철원군(능력개발)	
경기동부지사	성남시	경기도 성남시,이천시,여주시,광주시,하남시,양평군	
<a href="#">경기남부지사</a>	안성시	경기도 안성시,용인시,오산시,평택시	
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강서구, 동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연제구, 중구, 경상남도 양산시, 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(능력개발, 외국인고용지원) ※ 부산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부산남부지사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래구, 수영구, 영도구, 해운대구	
경남지사	창원시 (진주시)	경상남도 창원시,통영시,하동군,함안군,함양군, 합천군,거제시,거창군,고성군,남해군,사천시,산청군, 의령군,진주시,창녕군, 김해시·밀양시(자격검정) ※ 경상남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울산지사	울산시	울산광역시 ※ 울산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

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고령군,경산시,영천시,청도군 ※ 대구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경북지사	안동시	경상북도 안동시,예천군,의성군,청송군,영양군,영주시, 봉화군,문경시,상주시,군위군 ※ 경상북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경북동부지사	포항시	경상북도 포항시,영덕군,울릉군,경주시,울진군	
<a href="#">경북서부지사</a>	구미시	경상북도 구미시,김천시,칠곡군,성주군	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화순군,곡성군,구례군, 담양군,장성군,영광군,함평군 ※ 광주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전북지사	전주시 (군산시)	전라북도 전지역 ※ 전라북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전남지사	순천시	전라남도 여수시,순천시,광양시,고흥군,보성군 ※ 전라남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전남서부지사	목포시	전라남도 목포시,신안군,무안군,영암군,진도군,강진군, 해남군,완도군,장흥군	
제주지사	제주시	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※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관련 업무	
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,논산시,계룡시,부여군, 보령시,서천군,청양군, 홍성군(외국인고용지원) ※ 대전광역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충북지사	청주시	충청북도 전지역 ※ 충청북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충남지사	천안시	충청남도 천안시,서산시,태안군,아산시,예산군,당진시, 홍성군(능력개발, 능력평가) ※ 충청남도 기능경기 관련 업무	
<a href="#">세종지사</a>	세종특별 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 ※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 관련 업무	





## II. CEO(경영진) 의지

### 1. CEO(경영진)의 철학 및 의지

가. 사업 참여배경 및 목적 :

나. 그동안 정부지원 유사 교육훈련 사업 참여 여부

사업주훈련  채용예정자 훈련  학습조직화훈련

일학습병행제  핵심직무훈련

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 NCS 기업활용 컨설팅

### 2. 훈련근로자 대우

가. 훈련근로자 급여 수준 : ( )원/월

\* 급여수준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 (매년 최저임금 변경 반영)

<2021년 법정 최저임금>

△ 시간당 : 8,720원

△ 월단위 : 1,822,470원 (8,720원 x 209시간)

※ 209시간 = {(주당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/7x365일}/12개월

나. 현장훈련 시간 포함 훈련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: ( ) 시간

\*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

다. 공단 지부·지사로부터 훈련프로그램 인정 후 조속한(가급적 10일 이내)

훈련실시를 안내 받았으며 이러한 훈련실시 의무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

(확약서 제출)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

### 3. 사내훈련교사 후보군 보유

1) 인원 : ( )명

2) 자격

- 연구경력 : 기관명( ), 기간( )년

-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: ( )명

- 자격증 :  기능사 ( )명  산업기사 ( )명  기사 ( )명  
기능장 ( )명  기술사 ( )명 기타 ( )명

- 동일분야 현장 경력 2년 이상 ( )명

※ 현장교사 교육 이수 필수(온라인 5시간) 1명 이상(훈련 시작 전 이수 권고)

※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교육 이수자 교육 면제

<사내현장교사 자격요건>

- ①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
- ② 「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
-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
-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
- ⑤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
- ⑥ 지원기관(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) 운영위원회를 통해 훈련교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
### V. 안내사항(필독)

행정처분 통지 의무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맞춤형 현장훈련(S-OJT)에서는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을 적용(준용)하여, 동 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전반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■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아울러,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에 참여 중인 기업이 중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행정처분의 범위에 따라 진행 중인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의 중단 또는 추가 훈련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따라서,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</li> <li>■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.</li> </ul>
사업수행계획서 허위작성·제출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으로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훈련실시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□ (작성요령) 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이 귀사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, 각 항목별로 귀사의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	답변
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의지	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CEO의 참여의지가 충분하다.	예 / 아니오
	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의 활성화와 제도의 확산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.	예 / 아니오
훈련과정	기업의 자체 교육훈련계획 또는 직무별 교육훈련과정(현장교재 등)을 보유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육을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훈련근로자 지원 및 근로자의 교육 참여의지	훈련근로자의 학습권(학습시간)과 근로조건(임금 등)을 보장하고 훈련일정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계획이다.	예 / 아니오
	훈련근로자가 훈련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고충사항 해소 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	예 / 아니오
	근로자들이 현장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훈련 참여의지가 강하다.	예 / 아니오
기업현장교사 등 확보	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기업현장교사가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다.	예 / 아니오
	학습관리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시설 및 기자재	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기업명

대표    성명

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□ (참고) 본 확인서는 참여신청 기업에서 사전에 결격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. 참여 제한 요건은 공단의 심사 및 선정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하여 적용되므로 기재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I. 참여기업 개요			
기업명		대표자명	
소재지		주업종	
사업장소재지	성 명 : 주요업무 :	직 위 : 연 락 처 :	
II. 참여 제한요건 해당여부 (해당되는 경우 ○ 체크)			
임금체불 여부	(해당, 미해당)	산재다발 사업장 여부	(해당, 미해당)
참여제한 업종 <sup>주)</sup> 여부	(해당, 미해당)	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	(해당, 미해당)
고용보험납부요건 충족여부 <small>*1년 이상 납부, 체납없음</small>	(체납, 미체납)		
주) 참여제한 업종			
1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.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. 비영리사업자. 다만,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 다. 단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. 숙박업. 다만,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. 마.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.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.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. 협회 및 단체.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 자.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.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.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			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기업명

대표 성명

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

기업명 :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:  심사일자

면담대상자			심사자		
부서명	성명	직위	소속	성명·직위	서명

심사자 종합의견	
-------------	--

점검 항목		확인 결과(의견)
기업 여건의 적절성	<b>1. 기업규모</b> - 적절한 상시근로자수를 갖춰 교육훈련의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- 연간 매출액 규모의 충분성 (참고 : '18년도 전 직종 평균 1인당 매출액 : 227백만원)	
	<b>2. 기업의 일반적 근로조건</b> - 기업의 근로자 평균임금(연봉) 및 신입사원 초임(연봉)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인지 여부 - 급여 및 복지수준이 통상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지속적인 재직 동기 요인으로 충분한지 여부	
	<b>3. 독자적 기술력</b> -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고 업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여부 * INNOBIZ, World Class 300, 강소기업, 혁신기업, Best HRD 기업 여부 등 * <a href="http://sminfo.smba.go.kr">http://sminfo.smba.go.kr</a> 사이트의 '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'에서 신청기업 기술력 확인	
CEO (경영진) 의지	<b>1. CEO(경영진) 철학 및 의지</b> - CEO(경영진)의 기업맞춤형 현장훈련기업 육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(열의) - 기업차원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개인의 career 개발 비전 제시 여부 등 확인 - 유사 교육훈련 실시 경험 * 정부지원 유사교육훈련 및 기업 자체 교육훈련 운영 현황 등 확인	
	<b>2. 훈련근로자 대우</b> - 훈련근로자의 급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 여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    △ 시간당 : 8,720원('21년 최저 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△ 월단위 : 1,822,480원 (8,720원 x 209시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209시간 = {(주당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/7x365일}/12개월                     </div> - 현장훈련 시간 포함 훈련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 주 40시간 이하 여부 - 기타 훈련 이수자에 대한 우대계획	

<b>인력 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준비 상황</b>	<b>1. 훈련 대상 직무의 적절성</b> - 업무수행을 위해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 여부 * 단순반복 직무 제외, 훈련근로자의 학력수준 및 훈련직무를 고려 - 현장훈련 방식에 의한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 여부 * 숙련이 필요한 기술분야 직종 권장, 현장외 훈련이 가능한 사무·행정 등 분야는 지양 - 스마트팩토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	
	<b>2. 훈련인원 적정성</b> - 상시근로자 수 대비 훈련 인원 적정성 여부 * 너무 많을 경우 기업맞춤형 현장훈련기업 육성의 사업 취지보다는 정부 지원금 확보 등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.	
	<b>3. 훈련교사 후보군 보유</b> - 명장, 기능한국인, 숙련기술전수자,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기업의 숙련기술자 보유 여부 - 기타, 상기 숙련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근속 숙련기술자 등 확인 - 훈련근로자 대비 사내훈련교사(5명당 1명 권장) 인원, 자격 여부 확인  <사내 훈련교사 자격> ①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② 「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⑤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	
	<b>4. 물적 인프라 현황</b> - 기업맞춤형 현장훈련기업 육성(현장훈련) 운영을 위한 훈련 시설·장비 보유 여부 및 상태 - 스마트팩토리 구축 여부	

기업명				
심사일자				
훈련분야 (NCS 24개 대분류)	기계, 정보통신 등 24개 대분류 중 대표직무 선정 후 작성			
신청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과정(20~40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단기집중과정(4~8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팩토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화훈련(산업지구)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화훈련(스마트팩토리)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화훈련(K디지털)			
협약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				
관할 공단 지부·지사명				
<b>부적격 여부 심사</b>	Pass / Fail			
기업 건전성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* 고용노동부홈페이지 [정보공개]-[체불사업주 명단 공개]에서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 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* 고용노동부홈페이지 [알림마당]-[공고]-[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]에서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여부 * 기업체 인터뷰로 확인			
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에 의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			
경영진 의지	<input type="checkbox"/> CEO(경영진)철학 및 의지 미흡			
훈련근로자 급여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 월1,822,480원 미만(월 209시간 기준) ※ '21년도 최저시급: 8,720원			
훈련근로자 주당 근무시간	<input type="checkbox"/> OJT시간 포함 통상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기타 근로시간(탄력적 근로시간, 연장근로 등)			
현장훈련 직무 적합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숙련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무·서비스 인력을 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외훈련으로 훈련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직무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 (기타 사유: )			
훈련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수 대비 적정 훈련근로자 비율 이상일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시근로자 수 대비 적정 훈련근로자 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% 이내</td> </tr> </table>		상시근로자 수 대비 적정 훈련근로자 비율	50% 이내
상시근로자 수 대비 적정 훈련근로자 비율	50% 이내			
기업현장교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 확보 계획 여부			
시설 및 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훈련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자재 미확보			

소속 :            이름 :            (서명) / 소속 :            이름 :            (서명)

소속 :            이름 :            (서명) / 소속 :            이름 :            (서명)